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점 확인사항

2025. 6.

MAPA 합 정 동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동 감사 중점확인 사항

◇ 감사대상기간: 2022. 1. 1.~2025. 4. 30.

연번	직위	성명	중 점 확 인 사 항	비고
1	위원장	최은하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총괄	
2	부위원장	오욱자	○ 장애인등록 및 관리실태 -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급현황 - 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자동차표지 교부 등 - 장애인일자리	
3	위원	권인순	○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4	위원	김승수	○ 기초연금 지급관리 - 지급기준 및 접수실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효도밥상 운영에 관한 사항 ○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5	위원	한선미	○ 돌봄SOS사업 운영 실적 ○ 긴급복지 지원실태 ○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6	위원	고병준	○ 실뿌리복지동행센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통장 운영 ○ 후원(따뜻한겨울나기 등) 및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	
7	위원	차해영	○ 주거복지 추진실태 - 임대주택, 집수리사업, 주택 바우처 등 ○ 경로당 관리 현황	
8	위원	장정희	○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	
9	위원	장영준	○ 사례관리 진행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	

- 연번 2 -

중점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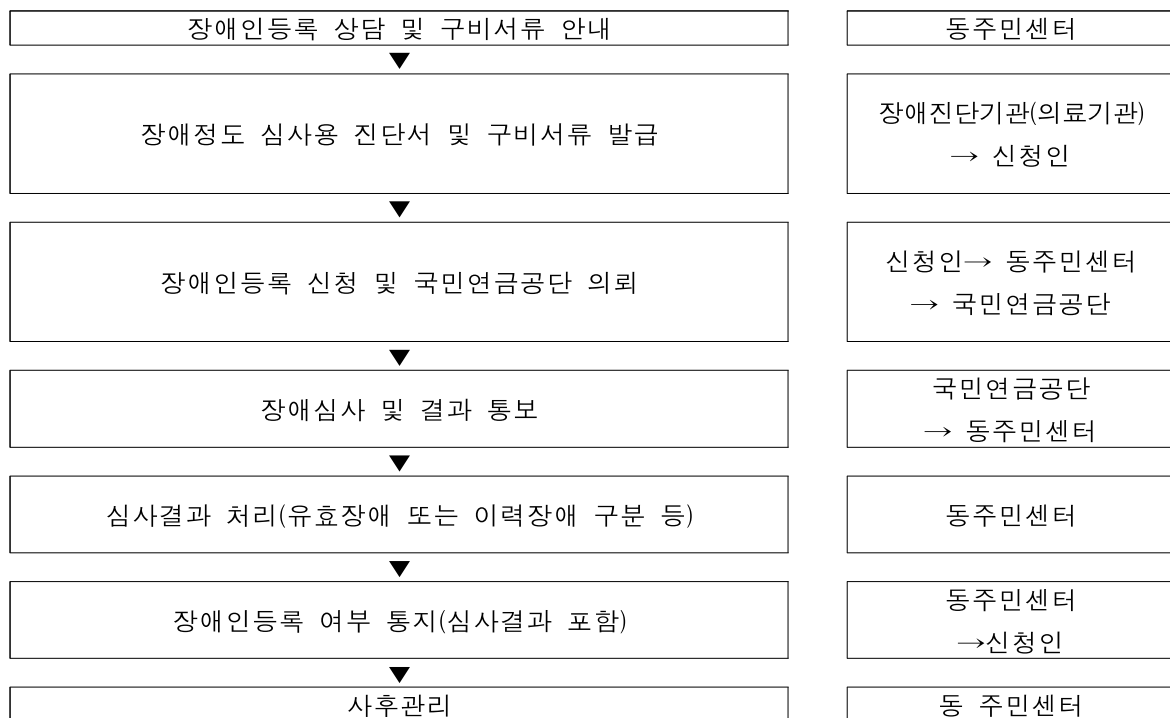
(오육자 위원)

- 장애인 등록 및 관리실태
 -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급현황
 - 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자동차표지 교부 등
 - 장애인일자리

☐ 장애인 등록 및 관리실태

- 근거제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10조
- 등록대상: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판정기준(고시)」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 자
 - *장애인 등록 이후, 재판정을 통해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등록내용 변경 또는 등록취소 등 사후관리 지속

○ 등록절차



○ 장애인 합정동 등록현황

(2025.4.30. 기준/ 단위: 명)

합 계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518	197	52	70	96	0	31	0
호흡기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3	6	1	8	1	29	5	19

○ 작성자 : 김수진(사회9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성별, 장애정도별 등록현황

(단위: 명)

구 분	성별		장애 정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 계	518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291	227	169	93	76	349	198	151

▶ 외국인(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명)

등록외국인 수	성별(나이)	주장애	장애정도
1	여(74세)	청각(청력)	심하지 않은 장애

▶ 시청각장애인(데프블라인드): 관내 대상자 없음

☐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급현황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최소 50,000원 ~ 최대 432,510원	60,000원(시설 30,000원)

○ 지급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4.3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장애인연금	721	189,615	691	197,938	726	222,052	250	78,377
장애수당	748	30,760	733	45,520	721	44,580	253	15,960

▶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 급 액: 최소 110,000원~최대 220,000원(시설 30,000원/90,000원)
- 지급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4.3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장애아동수당	36	3,960	36	3,960	36	3,960	11	1,210

○ 작성자 : 김수진(사회9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 발급대상
 -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2에 의한 등록장애인
 - 통합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보호자
 - ※ 고속도로할인카드 기능 추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의 보호자 및 차량 1대에 한함
- 발급현황 (단위: 건)

구 분	2022	2023	2024	2025.4.30.
복 지 카 드	52	78	49	11
고속도로할인카드	36	60	46	9
합 계	88	138	95	20

☐ 자동차표지 교부

- 발급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거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발급현황 (단위: 건)

구 분	2022	2023	2024	2025.4.30.
합 계	21	31	44	7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6세 이상 장애인
 - 장애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무료승차 지원
- 지원금액: 월 최대 5만원(실제 사용한 금액만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 지원
- 지원방법: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환급
- 지급일자: 매월 25일 지급
- 신청현황(2023년 7월부터 시행) (단위: 명)

2023	2024	2025.4.30.
259	51	11

☐ 장애인일자리

-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
- 사업내용

구 분		사업 기간	월 임금			근무현황 (배치업무)
			근로시간		인건비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12개월	1월~11월	주 5일 (40시간)	2,096,270원	2명 (복지도우미, 대형폐기물)
			12월	주 5일 (37.5시간)	1,965,880원	
	시간제	12개월	1월~11월	주 20시간	1,048,140원	-
			12월	주 19시간	993,980원	
복지일자리		12개월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561,680원	1명 (동문고 정리)

○ 지원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4.30.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30	57,433	36	72,381	24	49,458	8	16,770
복지일자리	24	11,780	24	12,509	24	13,089	6	3,029

○ 작성자 : 김수진(사회9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중점확인사항

(권인순 위원)

-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및 시행령 제20조
- 사업목적: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 빈곤지원과 자활사업 통해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
-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 자활근로사업 유형

구 분			실시기관
고용노동부자활사업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 근로	Gateway과정	마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마포구

- 사업유형별 근로기준 및 내용

(단위: 원)

대 상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구분				
월 평 균 근로일수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근로 임금 (월기준 표준소득)	지 급 액	64,220	56,210	32,980
	단 가	60,220	52,210	28,980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	1,565,720	1,357,460	753,480
내 용		간병, 교육보조원, 청소, 요식업 등		환경정비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단가 적용

- 동 주민센터 자활근로 추진실적

(단위: 명, 천원)

구분	참여대상자 현황		지급액
	근로유지형	도우미형	
2025.4.30.	-	1	4,297
2024	1	2	26,349
2023	2	2	41,287
2022	2	1	23,135

○ 작성자 : 오윤경(사회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거리환경지킴이

- 사업 개요

사업명	거리환경지킴이
유 형	노인공익활동사업
근 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대 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¹⁾
선 발	『공익활동형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 순 선정
내 용	동별 이면도로 청소, 무단투기 제도, 홍보 등
부적격	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

1)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한 경우 참여 가능

- 추진 현황

구분	2022	2023	2024	2025.4.30.
사업기간	2022.1.10. ~12.9.	2023.1.9. ~12.8.	2024.1.18. ~12.17.	2025.1.15. ~12.14.(예정)
수행기관	동 주민센터: 구 직영 7개 동(공덕~신수동) 마포시니어클럽: 9개 동(서강~상암동, *합정동 해당)			
활 동 비	만근 시 월 27만원		만근 시 월 29만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활동시간	월 30시간(일 3시간, 월 10일) *혹한기, 혹서기는 근무시간대 조정			
배정인원	35명	33명	33명	36명

- 근무 현황

- 근무일은 날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안전교육 6시간 이상(필수)을 포함하여 활동교육 연간 12시간 이상 실시
- 거리환경지킴이는 팀장 2명 선임하여 청소구역별 안전 및 관리 역할

○ 작성자 : 강지영(간호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 사업 개요

사업명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유 형	노인역량활용사업
근 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민선8기 구청장 공약 「우리동네 환경보안관 노인일자리 사업」
대 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선 발	수행기관(마포시니어클럽)에서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정
내 용	동 환경 취약지역 중심으로 환경보안관 활동
	- 에코리더(커피찌꺼기 수거 등) - 클린마포 - 녹색정비 (무단투기 상습구역 순찰·계도) (틈새녹지조성 및 경관 개선) - 안심마포(안전 취약지구 순찰)

- 추진 현황

구분	2023	2024	2025.4.30.
사업기간	2023.2.1. ~11.30.	2024.2.1. ~11.30.	2025.2.1. ~11.30.
수행기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9개 동(공덕~서교동) 마포시니어클럽: 7개 동(합정~상암동)		
활 동 비	월 712,800원	월 761,040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활동시간	월 60시간(주 5일, 일 3시간)		
배정인원	4명	6명	6명

※ 2023. 2.부터 사업시작

- 기관별 역할

구청(어르신동행과)	동주민센터	수행기관(마포시니어클럽)
- 동별 건의사항 수렴 - 활동 및 실적 관리 - 주기적인 활동 모니터링 - 보조금 교부	- 취약지역 선정 - 직무계획 수립 - 출근부 확인 및 수합·제출 - 동별 직무교육 수시 운영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참여자 필수교육 실시 - 참여자 근무관리 및 임금지급 - 월별 활동 모니터링

- 근무 현황

- 날씨 등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우천 시 실내활동)
- 안전교육(6시간), 소양교육(5시간), 직무교육(6시간) 총 17시간 이상 의무 교육 실시
- 2개조(3구역)로 매일 3시간씩 관내 전 지역 환경개선

○ 작성자 : 강지영(간호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중점확인사항

(김승수 위원)

- 기초연금 지급관리
 - 지급기준 및 접수실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 효도밥상 운영에 관한 사항
-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 **기초연금 지급관리**

- 기초연금제도 개요
 - 근 거: 기초연금법
 - 목 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25년): 단독가구(2,280,000원)/ 부부가구(3,648,000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재산-공제액-부채)×4%/12개월]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11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공적연금, 재산소득 등
- 기본재산액 공제: 일반재산(대도시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2천만원)

- 지급금액: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 또는 부부 중 1인 수급: 최고 342,510원/ 최저 34,250원
 - 부부 동시 수급: 최고 각 274,000원(20% 감액)/ 최저 34,250원

○ **기초연금 신청 및 책정현황**

(단위: 명)

추진기간	65세 이상	신청자	책정자	책정제외
2025.4.30.	2,769	81	43	38
2024	2,732	230	122	108
2023	2,650	181	98	83
2022	2,645	232	122	110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건, 천원)

추진기간	대상자		지급건수	지원금액
	세대수	가구원수		
2025.4.30.	1,175	1,490	5,805	1,765,326
2024	1,155	1,462	17,155	5,040,733
2023	1,131	1,427	17,068	4,910,997
2022	1,138	1,434	16,978	4,654,801

※ 관내 전체 노인인구(2,769명/'25.4.30.기준)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 53.8%

○ 작성자: 강지영(간호8급) ○ 검토자: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김정혜(합정동장)

□ 효도밥상 운영에 관한 사항

○ 추진근거: 민선8기 구청장 공약 「75세 이상 어르신 무상효도급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 대 상: 마포구에 거주하는 결식우려가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

○ 추진내용: 무료중식 제공 및 안부 확인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2025.4.30.기준)

구 분	1호점	2호점	3호점
장 소	청주식당(성지1길 18)	다운교회(토정로 12-6)	합정경로당(동교로8길 58)
운영방법	현장급식형 (현장에서 조리 및 배식)	이동급식형 (반찬공장에서 배송 후 배식)	
운영시간	주 6일(월~토), 10:00~11:00	주 5일(월~금), 11:00~12:00	
운영기간	2023. 8. 9. ~2025.3.31.종료	2024. 4. 15.~현재	2024. 10. 24.~현재
정원/현원	25명 / 종료	37명 / 37명	36명 / 36명
이용실적	11,228식(25.3.31.기준)	9,068식(25.4.30.기준)	4,706식(25.4.30.기준)
운영인력	종료	노인일자리 2명 동행일자리 1명	노인일자리 2명 중식도우미 1명

○ 이용대상자 선정

구 분	내 용
대상자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75세 이상 1인가구 또는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 - 독거, 보훈, 결식우려, 고령, 근거리 거주 등을 고려하여 동 선정심사 위원회에서 결정
선정방법	동 선정심사위원회(위원장: 동장) 구성·심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5인으로 구성하며 서면 심사)
심사방법	선정심사표에 따라 적정, 부적정 검토 후 고령자순으로 결정

○ 작성자 : 강지영(간호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 7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

(2025.4.30.기준/단위: 명)

구분	합 계	75 ~ 84세	85 ~ 94세	95세 이상
남	500	389	103	8
여	765	572	175	18
합계	1,265	961	278	26

○ 75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 현황

(2025.4.30.기준/단위: 명)

연령	합 계	75 ~ 84세	85 ~ 94세	95세 이상
남	90	67	20	3
여	282	205	69	8
합계	372	272	89	11

※ 독거노인 비율: 29.4%

중점확인사항

(한선미 위원)

- 돌봄 SOS사업 운영 실적
- 긴급복지 지원실태
-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 **돌봄SOS사업 운영 실적**

- 지원 대상
 - 긴급·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
 - 서비스 제공은 돌봄 매니저의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 판단하여 결정
- 지원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전액 본인 부담
 - ※ 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2호
- 지원 한도
 - 2025년 기준 1인 연간 금액: 1,800천원. 재료비 20만원, 교통비 15만원
- 서비스 종류

서비스명		내 용
일시재가서비스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수발서비스를 제공
단기시설		일정기간 시설 입소를 통해 서비스 제공
일 상 편 의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식사 배달 제공
	동행지원	필수적인 외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병원 동행 등)
	주거편의	가정 내 간단한 수라보수, 대청소, 방역서비스 제공(방충망, 안전 바 설치 등)

○ **운영실적**

(단위: 가구, 건)

추진기간	지원가구(중복제외)				서비스유형					
	소계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 가구	소계	일시 재가	단기 시설	식사 지원	이동 지원	주거 편의
2025.4.30.	19	14	5	-	25	6	0	5	7	7
2024	75	56	19	-	116	10	0	39	31	36
2023	61	36	24	1	124	20	0	48	33	23
2022	79	48	31	-	141	44	0	54	22	21

○ 작성자 : 강지영(간호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긴급복지 지원실태

- 지원근거: 긴급복지 지원법
- 사업개요: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등 위기상황을 극복토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국가형 긴급복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재산기준: 2억4천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원수 생활준비금에 600만원 합산한 금액 이하
- 서울형 긴급복지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 재산기준: 4억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긴급복지 지원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긴급복지 사업					
	합계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건수	지원금액	신청건수	지원금액	신청건수	지원금액
2025.4.30.	39	37,717	32	30,420	7	7,297
2024	111	94,286	87	77,019	24	17,267
2023	126	99,417	101	84,837	25	14,580
2022	153	101,224	116	80,841	37	20,383

○ 작성자 : 오윤경(사회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7조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5조, 제8조
- 목 적 : 사회적 고립가구를 상시 돌보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우리동네 돌봄단을 운영하여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25. 1. ~ 12.(12개월)
 - 사업내용: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 확인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고독사 위험가구 체크리스트를 통한 위험군별 전화·방문을 통한 정기적 안부 확인
 - 자조모임, 문화체육활동 등 사회적 관계망 지원 등
 -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가구 현황 공유 및 활동일지 작성,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
- 우리동네돌봄단 모니터링 대상자 현황

(2025.4.30.기 준/단위: 명)

계	유형별			계	주기별			계	자격별		
	고 위험군	중 위험군	저 위험군		주2회	주1회	2주1회		기초 수급자	차상위	일반
120	2	16	102	120	8	95	17	120	100	8	12

○ 위기가구 안부확인 추진실적

(단위: 명, 건)

추진기간	대상자수	연인원	모니터링 추진실적			자원연계 활동실적
			계	방문	전화	
2025.4.30.	120	480	1,544	208	1,336	61
2024	130	1,554	5,097	522	4,575	302
2023	159	1,902	1,744	118	1,626	52
2022	79	711	756	40	716	44

○ 작성자 : 이지은(사회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중점확인사항

(고병준 위원)

- 실뿌리복지동행센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통장 운영
- 후원(따뜻한겨울나기 등) 및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

□ 실뿌리복지동행센터(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 ‘아이에서 어른까지,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 주민까지’ 구민의 삶에 스며드는 촘촘한 복지
- 2015년부터 추진해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빈곤, 돌봄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 지원하고 통합상담을 강화하는 복지, 건강 중심의 마포형 동 주민센터
- 주요 개편사항
 - 복지·건강분야 기능 중심으로 사업범위 조정
 - 마을·주민자치·여성분야 제외, 우리동네주무관 사업 종료

분야	변경 전	변경 후	
복지	65세 도래 어르신 보편방문	종료	
	출산·양육가정 보편방문	종료	
	빈곤·돌봄위기가구 방문	질적 방문 강화, 신규가구 발굴·방문강화	
건강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보편방문	종료	
	건강취약계층 방문	(1차)	동 방문간호사 건강평가 실시
		(2차)	복합만성질환 계속관리 보건소 집중관리 동 방문간호사 주기적 관리

- 추진방향

- 서울시 동행센터 개편에 따른 복지·건강 중심 동주민센터의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 (복지플래너 등의 취약계층 집중 방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방문)
-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1차적 방문 건강관리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중심으로 추진
- 실뿌리 복지전달체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마포형 지역·주민밀착형 동 중심 복지지원 강화

- 인력 운영현황

(단위: 명)

계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복지상담전문관
7	5	2	3(복지플래너와 중복)

○ 작성자 : 오대성(사회7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주요사업 내용

과 제	구 분	업 무 내 용	
복지·건강 중 심 복 지 전달체계 구 축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	빈곤·돌봄 위 기 가 구	- 대상: 기존 복지대상자, 은둔형 취약계층 주민 - 내용: 빈곤 돌봄위기가구 체계적 방문관리, 예방복지서비스 실현,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방 문 간 호 서 비 스	- 대상: 건강취약계층 - 내용: (1차) 동 방문간호사 건강 평가 실시 (2차) 복합만성질환: 보건소 집중관리 계속관리: 동 방문간호사 주기적 관리
통 합 서 비 스 제 공	복 지 상 담 전 문 관		- 내방 민원인의 표현되지 않은 이면의 욕구까지 포착하여 종합심층 상담 및 서비스 관련기관 연계 - 복지서비스 신청 초기상담 시 전문적인 종합상담을 통해 서비스 누락 예방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원스톱 서비스 정보 제공 ※ 지원절차: 내방상담(기본사항 확인, 복지상담 진행) → 맞춤형 서비스 신청·접수 → 서비스 관련기관 의뢰 → 사후처리
	동 단 위 사 례 관 리		- 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여 문제해결에의 주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 동주민센터, 민간기관, 구 지역복지팀 협업 추진 ※ 지원절차: 사례발굴·접수(주민, 공무원 등) → 욕구 실태조사(동 사례담당) → 내부 사례회의(동 복지팀)/ 통합 사례회의(동 사례위원회) → 서비스 제공 및 점검(동 사례위원회) → 종결 및 사후관리(동 사례위원회)
복 지 생 태 계 구 축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 성 화		- 복지소외계층의 상시 발굴 및 이웃이 이웃을 돕는 동 단위 복지 기능 및 인적 안전망 구축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동 특화사업 추진
	실뿌리복지 동 행 단 운 영		-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동 단위 주민모임인 실뿌리복지 동행단을 구성하여 세심하고 촘촘한 실뿌리복지 구현 - 효도밥상 식재료 제공을 위한 스마트팜 관리 지원, 효도밥상 반찬공장 및 급식시설 지원, 경로당 및 어린이집 지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활동 지원 등

○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운영실적

- 복지·건강 중심 복지 전달체계 구축 추진실적
-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단위: 건)

추진기간	추진율(%)	모니터링계획	모니터링실적	서비스연계
2025.4.30.	100	809	809	110
2024	100	2,453	2,453	845
2023	101	2,593	2,611	454
2022	100	1,567	1,567	430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연계, 후원물품 연계 등

- 방문간호서비스 운영 실적

구분	관리대상 (명)	방문간호서비스(회)				보건복지 연계(건)
		계	직접방문	내소방문	전화방문	
2025.4.30.	896	931	500	207	224	149
2024	891	3,659	1,837	252	1,570	529
2023	770	3,319	1,582	373	1,364	589
2022	661	2,478	383	964	1,131	236

- 통합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 복지상담

(단위: 건)

추진기간	복지상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2025.4.30.	2,223	353
2024	8,066	913
2023	9,122	1,159
2022	8,269	1,005

- 동 단위 사례관리

(단위: 건)

추진기간	사례회의			사례관리			
	소계	내부회의	통합회의	소계	서비스연계	동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2025.4.30.	9	9	-	2	-	-	2
2024	21	21	-	6	4	2	-
2023	15	15	-	6	3	-	3
2022	29	24	5	17	12	1	4

○ 작성자 : 오대성(사회7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통장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 최초구성일: 2014.11.12.
-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

○ 조직체계: 공동위원장(공공, 민간) 2명, 위원 10명

- 구성현황

(2025.4.30.기준/단위: 명)

합계	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복지 통장	직능단체 위원	종교인	자영업자	기타 지역주민
12	2	6	0	1	0	1	2

※ 5기 협의체 위원 정비: 12명(임기기간: 2023.11.12. ~ 2025.11.11.)

- 협의체 역할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상시 발굴(고독사 위험가구 등) 및 보호체계 구축
-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 운영실적

추진기간	화약 교육	특화사업 『혼자가 아닌 우리-합정 행복공작소』	
2025. 4.30.	1회	추진기간	2025. 4월 ~ 2025. 12월
		추진내용 (4개사업)	『혼자가 아닌 우리-합정 행복공작소』 - 행복반찬나르미 지원: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밑반찬(6종) 지원을 통한 건강개선 및 안부확인/총9회, 30명(예정) - 합정 문화살롱 사업: 중장년 1인가구와 함께하는 문화 힐링공간(월데이 클래스 2회, 청춘극장 2회)/총4회, 20명(예정) - 청춘 헤어살롱 사업: 지역 나눔가게 자원발굴 연계를 통한 독거어르신 삶의 활력을 주는 미용건강 프로젝트 헤어샵 이용쿠폰 지원/총18명(예정) - 건강백세운동교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질병예방과 건강한 백 세시대를 위한 운동교실로 주1회, 2개반 운영 후 월1회 참여자들이 함께 생신축하행사 진행(현재 여성반 25명/ 남성반 7명 참여중)
		소요예산	6,570,000원

○ 작성자 : 이지은(사회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추진기간		회의 교육	특화사업 『합정(合)에서 정(情)들가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행』	
2024	4회	추진기간	2024. 4월 ~ 2024. 12월	
		추진내용 (3개사업)	『합정(合)에서 정(情)들가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행』 - 밀반찬지원 : 사회적 고립 중장년 및 독거노인 1인 가구에 시니어클럽에서 구입한 밀반찬(6종) 가정방문을 통한 전달 및 안부확인/총 5회, 30명(연인원 150명) - 제철음식 요리교실 : 중장년 1인가구와 함께하는 제철음식(삼계탕, 과일꾸러미, 명절음식, 김장김치 등) 요리교실 진행 후 취약가구에 전달 실시/ 총 4회, 10명(연인원 40명), 음식수혜자 총130명 - 건강백세운동교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질병예방 및 건강운동교실 주1회(총8개월) 운영 후 월1회 생신축하행사 진행/ 총22회, 20명(연인원 418명)	
		소요예산	5,865,000원	
2023	4회	추진기간	2023. 4월 ~ 2023. 12월	
		추진내용 (1개사업)	『합정에서 더하기(合) 정(情)-반찬나르미』 - 거동불편으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25가구의 가정방문을 통한 밀반찬 지원으로 영양상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서적지지 - 총 14회(월2회), 25명(연인원 350명)	
		소요예산	4,464,000원	
2022	4회	추진기간	2022. 4월 ~ 2022. 12월(7,8월 제외)	
		추진내용 (1개사업)	『합정에서 더하기(合) 정(情)-반찬나르미』 - 거동불편으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의 가정방문을 통한 밀반찬 지원으로 영양상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정서적지지 - 총 14회(월2회), 20명(연인원 280명)	
		소요예산	3,448,000원	

○ 복지통장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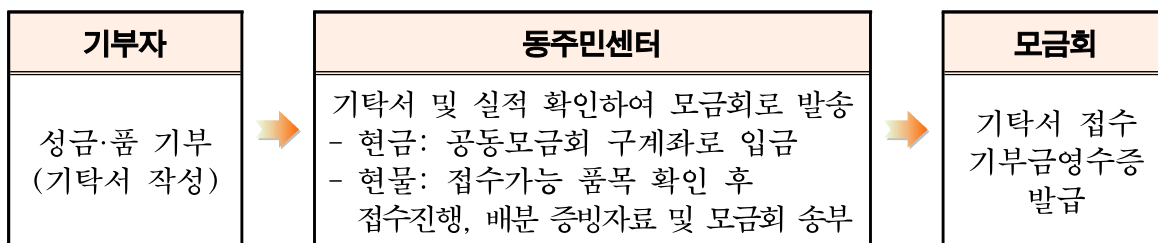
- 관련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1호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호의2 제1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 제1항 제9호(저소득층 지원 사업 협조)
- 구성현황: 복지통장 23명
- 활동역할
 -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제보
 - 고독사 저위험군 및 기타 모니터링 대상가구 정기순찰
 - 설·추석 명절 돌봄 취약가구 상시 보호 체계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 통별 위기가구 일촌맺기(23가구)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활동
 - 분기별 저소득가구 가정방문하여 종량제 봉투 전달하며 안부 확인 등

○ 작성자 : 이지은(사회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후원(따뜻한 겨울나기 등) 및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

○ 후원(따뜻한 겨울나기 등) 운영

- 추진근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 제1항 및 제4항(기부금품의 모집)
202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추진 계획[복지정책과-19380(2024.11.11.)호]
- 추진목적: 저소득 주민 계층 보호 및 민간재원 발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
- 추진방향
 -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자원 확보
 -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나눔 참여와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바람직한 이웃돕기 모델 정착
 - 기부채널 확대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겨울철 집중모금 캠페인 홍보
- 추진기간: 2024. 11. 15. ~ 2025. 2. 14.(3개월간)
- 추진방법
 - 현금·물 접수방법



- 배분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등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 가구
- 배분방법

구 분	배분방법
현 금	- 지정기탁서 대상자 발굴 및 선정 - 저소득주민의 주민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지원 - 나눔네트워크사업 중 우리동네 촘촘이음사업 예산
현 물	- 지정기탁에 의해 저소득가구에 즉시 배분

○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실적

(단위: 천원, %)

추진기간	목표액	총 모금액	현금	현물	달성율(%)
2024.11.15. ~ 2025.2.14.	40,000	53,868	40,934	12,934	134.7
2023.11.15. ~ 2024.2.14.	38,000	48,679	28,360	20,319	128.1
2022.11.15. ~ 2023.2.14.	41,800	42,024	19,948	22,076	100.5
2021.11.15. ~ 2022.2.14.	42,200	59,862	43,075	16,787	141.9

○ 작성자 : 이지은(사회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現. 주민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사업)

- 관련근거: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2025년 마포구 나눔네트워크 사업 연간 사업계획서(마포복지재단-38510(2025.4.7.)호)
- 사업목적: 생활이 어려운 틈새계층의 주민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복지 안전망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4. ~ 2026. 3.(12개월)
 - 사업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이하)
 - 사업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재난·재해 긴급 지원비		재난(자연/사회)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지원	최대 300만원	구성금 동성금
효도건강 의료비	치과치료 비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등 의치·보존·보철 치료비	최대 100만원	
	의료비	(65세 이상)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	최대 200만원	
환한미소 찾아주기		(65세 미만)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크라운 등 의치·보존·보철 치료비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위기상황으로 인한 생계 곤란에 따른 생계유지비	가 구 규 모 별 지원금액 상이	동성금
의료비		(65세 미만)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	최대 200만원	
공공요금 체납비		전기, 수도, 가스, 건강보험 체납비	최대 50만원	
주거지원비		주거비(보증금, 월세 등), 이사비, 특별주거비	최대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원비		보일러 수리/교체, 도배·장판 교체, 쿨루프 도색, 단열 등	최대 50만원	
기타 지원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0만원	구성금 동성금

○ 지원현황

(단위: 건, 천원)

추진기간	예산현황	총 지원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치과치료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025.4.30.	32,744	10	7,751	4	1,751	-		-		6	6,000
2024	22,760	25	17,260	7	2,572	2	1,968	7	3,720	9	9,000
2023	14,273	12	8,080	-	-	-	-	7	3,080	5	5,000
2022	14,701	21	14,977	3	902	3	1,552	8	3,923	7	8,600

○ 작성자 : 이지은(사회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연번 7 -
중점확인사항

(차해영 위원)

- 주거복지 추진실태
 - 임대주택, 집수리사업, 주택 바우처 등
- 경로당 관리현황

☐ **주거복지 추진실태**

- 사업개요

구분		대 상	내 용	
주택 지원	전세임대	- 생계·의료 수급자 -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 저소득 고령자	일반	사업시행자(LH,S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		수시	곰팡이, 누수, 결로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저하세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주요청세대, 퇴거요청세대 등에게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
	영구임대			사업시행자(LH,SH)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집수리 지원	희망의집수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도배·장판 등 18개 공종 집수리 지원
	에너지효율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창호·단열·배덕배관, 보일러 교체 및 에어컨 지원
주거비 지원	주택바우처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하는 기준 중위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1인가구 12만원, 2인가구 13만원 등 지원
	반지하특정 바우처	-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에서 자상층으로 이주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가구		월 20만원, 최장 6년(72개월) 지원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 19~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기준 중위 6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월 20만원 최대 24개월(회) 지원

○ 작성자 : 염향유(사회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추진실적

(단위: 건, 천원)

추진 기간	주택 지원(신청/선정)					집수리지원 (신청/선정)		주거비 지원(가구/천원)		
	총계	임대주택			취약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 효율개선	바우처		청년 월세
		전세	매입	영구				주택	반자하	
2025. 4.30	21/ 미정	16/ 미정	-	-	5/ 미정	2/1	8/미정	30/ 3,680	10/ 2,400	215/ 47,800
2024	107/ 29	27/ 2	29/ 4	32/ 4	19/ 19	5/1	15/15	110/ 10,810	16/ 3,400	342/ 87,750
2023	157/ 39	53/ 7	27/ 4	53/ 4	24/ 24	4/1	19/19	134/ 12,340	14/ 3,200	207/ 48,000
2022	103/ 39	12/ 6	18/ 8	50/ 2	23/ 23	1/0	15/15	169/ 15,185	-	18/ 8,000

※ 2025.4.30. 기준, 2025년도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모집 없음.

□ 경로당 관리 현황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47조(비용의 보조)
- 사업목적: 노인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 참여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이용을 독려
-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경로당 현황: 총 3개소(구립 3개소)

(2025.4.30.기준)

연번	경로당명	주소	등록 회원수	방문인원 (평균)	중식	프로그램 운영 (※)	면적
1	(구립)희우경로당	동교로 62-6	37명	15명	주3회	○	55m ²
2	(구립)양화진경로당	양화진길 43	35명	20명	-	○	128m ²
3	(구립)합정경로당	동교로8길 58 3층	36명	35명	효도 밥상	○	215m ²

※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프로그램(노래, 체조), 건강체조, 건강지압교실 등(수행기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마포노인 종합복지관)

○ 동주민센터 경로당 운영실적

구분	2022	2023	2024	2025.4.30.
무더위쉼터 관리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구급함, 손소독제 배부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구급함, 손소독제 배부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안내표지판1개 배부 ·구급함, 손소독제 배부	·무더위쉼터 운영기간 미도래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한파쉼터 관리	·한파쉼터 현장점검	·한파쉼터 현장점검	·한파쉼터 현장점검	·한파쉼터 현장점검
	1개소(양화진)	1개소(양화진)	1개소(양화진)	1개소(양화진)
기타 현황관리	-	·경로당 운영실태조사	·삼장충격기 설치현황 조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 황조사	·경로당 전문 청소지 원 요청(2개소)

○ 작성자 : 강지영(간호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중점확인사항

(장정희 위원)

-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

☐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지급현황**

-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지원금액 (단위: 천원)

사업명	연 령	금 액	연 령	금 액	비고
보육료	만0세	540	만2세	394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
	만1세	475	만3~5세	280	
양육수당	만0~1세	-	만2세 이후	100	가정 양육 시 지급

- 신청현황

(단위: 명)

기 간	계	보육료	양육수당
	인 원	인 원	인 원
2025.4.30.	162	137	25
2024	185	155	30
2023	221	175	46
2022	301	207	94

※ 어린이집에서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보육료 결제

※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구청에서 지급

○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 근 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9조
- ※ 2022년부터 '첫만남 이용권 사업' 시행에 따라 마포구 출산축하금이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로 전환
- 지급대상: 2011. 1. 1. ~ 2021. 12. 31. 이전 출생아
- 지급금액

대상	첫 째	둘 째	셋 째	넷 째	다섯째 이상
지급액	1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청·지급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22
신청건수 / 지원금액	4 / 700

※ 2021년 12월 출생자의 2022년 1월 신청 및 지급현황임

○ 작성자 : 김수진(사회9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첫만남이용권 신청·지급 현황

- 근 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항~제6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 대 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바우처)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 용 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신청·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4.
신청건수	56	66	71	22
지원금액	112,000	132,000	163,000	48,000

☐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 모금현황

(단위: 건, 원)

추진기간	구분	모금횟수	모금액
2024.11.15. ~ 2025.2.14.	성금	20	40,934,770
	성품	8	12,934,000
소계		28	53,868,770
2023.11.15. ~ 2024.2.14.	성금	17	28,360,290
	온누리상품권	1	10,000,000
	성품	4	10,319,000
소계		22	48,679,290
2022.11.15. ~ 2023.2.14.	성금	17	19,948,560
	온누리상품권	1	10,000,000
	성품(가중치 50% 적용)	11	12,076,090
소계		29	42,024,650
2021.11.15. ~ 2022.2.14.	성금	19	33,075,430
	온누리상품권	1	10,000,000
	성품(가중치 50% 적용)	8	16,787,350
소계		28	59,862,780

- 지원현황(성금 제외)

(단위: 가구, 원)

추진기간	성금품	지원세대	지원금(환가액)
2024.11.15. ~ 2025.2.14.	백미, 잡곡	155	4,180,000
	김치	200	4,990,000
	빵	150	2,164,000
	식사제공	100	1,600,000
소계		605	12,934,000
2023.11.15. ~ 2024. 2.14.	백미	65	2,700,000
	김치	200	4,653,000
	안경테	28	2,966,000
	온누리상품권	100	10,000,000
소계		393	20,319,000
2022.11.15. ~ 2023.2.14.	백미	104	2,662,130
	김치	237	6,086,960
	전기매트, 겨울이불 등	40	1,857,000
	기타(라면, 도시락, 고기 등)	112	1,470,000
	온누리상품권	100	10,000,000
소계		593	22,076,090
2021.11.15. ~ 2022.2.14.	백미	46	640,850
	김치	313	8,316,500
	기타(겨울이불, 전기장판 등)	287	7,830,000
	온누리상품권	100	10,000,000
소계		746	26,787,350

○ 작성자 : 이지은(사회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연중 이웃돕기 지원 및 후원현황(따뜻한겨울나기 기간 제외)

(단위: 가구, 원)

추진기간	후원금품내용	지원세대	지원금
2025.4.	떡국떡, 빵	191	2,843,000
	기타(식사제공 등)	40	1,280,000
	현금	7	7,110,000
소계		238	11,233,000
2024	백미	40	1,138,400
	김치	136	4,732,800
	기타(식사제공, 호떡, 삼계탕 등)	398	7,858,200
	현금	105	18,860,000
소계		679	32,589,400
2023	백미	28	781,200
	김치	153	5,110,200
	기타(떡, 밀반찬, 타올 등)	390	5,644,000
	현금	103	11,100,000
소계		674	22,635,400
2022	백미	50	1,214,000
	온누리상품권	100	10,000,000
	기타(떡, 음료 등)	414	5,680,000
	현금	2	200,000
소계		566	17,094,000

○ 정기후원 현황

(2025.4.30. 현재)

연번	후원기관	후원대상	후원금액	지원내용
1	한국100주년 기념교회	독거어르신 25명	연 3,225,600원	주3회 가정방문을 통한 야쿠르트 지원 및 안부확인
2	한강중앙교회	독거어르신 15명	연 2,000,000원	독거어르신 방문하여 생신 축하 및 생일 선물 전달(10만원 상당)
3	재단법인 소명 '보릿고개' 무료급식소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13명	-	주2회(화, 목) 밀반찬 4종 가정방문 전달 및 안부확인
4	폴드베이커리	저소득 아동 50명	월 750,000원	관내 지역아동센터 2개소/주1회 빵 50개씩 지원
5	명품수제숯불갈비	독거 어르신 월 10명	월 320,000원	매월 10명/주1회 식사제공
6	평생동반자 우리	관내 어르신	월 1,000,000원	효도밥상 정기후원
7	성산중학교	저소득 청소년 10명	연 10,000,000원	저소득 다자녀 가구 장학금 지원(3자녀 이상)
8	들머리회	저소득 아동 2명	500,000원(연2회)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 작성자 : 이지은(사회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 사업목표

- 국민기초수급자 중 갑작스런 질병·사고 등 위기사항 해소
-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원으로 가정해체 방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5년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중위소득 70%	1,674,409	2,752,860	3,517,747	4,268,441	4,975,734	5,645,363	6,291,899

- 재산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지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
 - 체납액: 최대 50만원 한도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비 및 의료비	358,000	589,000	753,000	914,000	1,066,000	1,209,000	1,348,000
건강보험료·공공요금 체납액	건강보험료, 전기, 수도, 가스요금 /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실적

(단위: 건, 원)

추진기간	생계비 및 의료비		건강보험료·공공요금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4.	11	3,830,390	5	1,390,420
2024	20	6,337,770	1	359,230
2023	16	4,792,000	1	365,960
2022	13	4,387,000	7	1,827,390

○ 작성자: 오윤경(사회8급) ○ 검토자: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김정해(합정동장)

☐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

○ 방문행정(모니터링) 추진체계(동주민센터)

- 개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계획수립(행복e음, 모니터 주기 등)
- 대상자 모니터 상담 후 행복e음 상담결과 등록

○ 대상가구 현황: 총 440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위기도 분류표에 의해 모니터링 주기 결정

- 위기5단계, 심각4단계, 경계3단계, 주의2단계, 관심1단계

○ 모니터링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440	349	80	11

※ 기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복지급여 중지되었으나, 독거노인 또는 중장년 1인 가구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자 / 복지대상자는 아니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몸이 아픈 노인 부부가구

○ 모니터링 추진실적

(단위: 건)

계	2022	2023	2024	2025.4.30.
7,440	1,567	2,611	2,453	809

- 65세이상 독거노인 모니터링 추진실적

(단위: 명, 건)

추진기간	인원	추진실적
2025.4.30.	145	401
2024	141	1111
2023	132	1046
2022	86	673

○ 작성자 : 오윤경(사회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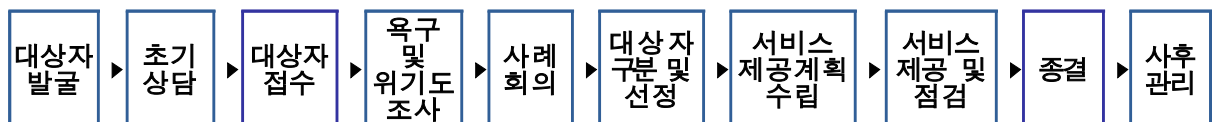
중점확인사항

(장영준 위원)

- 사례관리 진행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신청 • 접수 추진실태

□ 사례관리 진행현황

- 추진개요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 지원대상: 복합적·지속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로서, 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및 빈곤예방 지원이 가능한 가구
 - 대상구분: 위기도 및 욕구조사 실시 후 사례회의를 거쳐 구분
 - 서비스연계 가구: 단편적 욕구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동사례관리 가구: 복합적 서비스 제공 및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구 통합사례관리 가구: 위기상황으로 구청 지역복지팀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추진절차



- 사례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 명)

계	동주민센터	구	복지기관
16	10 (주민복지팀장 및 직원 8, 방문간호사 2)	2 (지역복지팀 통합사례관리사 1, 드림스타트팀 이동통합사례관리사 1)	4 (미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미포구차안심센터, 우리미포복지관, 미포구청산간강복지센터 각 1)

- 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 건)

추진기간	사례회의			사례관리			
	소계	내부회의	통합회의	소계	서비스연계	동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2025.4.30.	9	9	-	2	-	-	2
2024	21	21	-	6	4	2	-
2023	15	15	-	6	3	-	3
2022	29	24	5	17	12	1	4

- 사례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추진기간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	집행	예산	집행
2025.4.30.	4,000	-	5,200	-
2024	4,000	4,000	5,200	2,716
2023	3,937	3,937	5,200	790
2022	3,772	3,772	3,200	3,005

○ 작성자 : 오대성(사회7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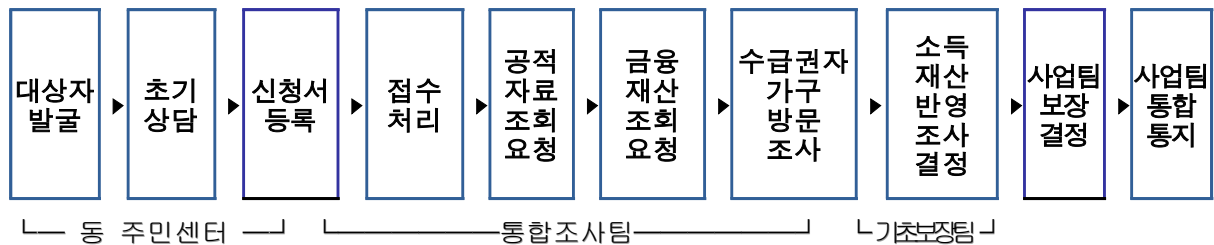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급여의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신청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신청 구비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신고서, 주거관련서류,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업무 처리 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책정현황

(2025.4.30. 기준 / 단위:가구)

추진기간	신청			책정			
	합계	국민기초 (차상위포함)	한부모가족	합계	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2025.1.~4.	61	59	2	31	17	12	2
2024	198	190	8	92	59	30	3
2023	340	335	5	103	85	16	2
2022	212	211	1	70	54	15	1

※ 차상위 및 한부모 신청의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시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

○ 작성자 : 김소리(사회8급) ○ 검토자 : 안옥부(행정6급) ○ 확인자 : 김정해(합정동장)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목록(동행정감사)

◇ 해당기간: 2023. 1. 1.~2025. 4. 30.

연번	분류	요구의원	요구자료	비고
3	동행정-03	김승수	○ 동별 장애인 현황 및 지원 현황 - 장애종류별 등록장애인 수 (2025년 4월 30일 기준) - 장애인연금 지원현황 - 장애수당 지원현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4	동행정-04	김승수	○ 동별 수급자 현황 - 해당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 가구 수 - 해당동의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 -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및 인원 수 -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수 - 교육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수	

- 동행정 03 -

(합정동)

○ 동별 장애인 현황 및 지원 현황 (김승수 위원)

- 장애종류별 등록장애인 수(2025년 4월 30일 기준)
- 장애인연금 지원현황
- 장애수당 지원현황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 장애종류별 등록장애인 수

(단위: 명)

합 계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518	197	52	70	96	0	31	0
호흡기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3	6	1	8	1	29	5	19

☐ 장애인연금 지원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23		2024		2025.4.3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장애인연금	691	197,938	726	222,052	250	78,377

☐ 장애수당 지원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2023		2024		2025.4.3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장애수당	733	45,520	721	44,580	253	15,960
장애아동수당	36	3,960	36	3,960	11	1,210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건)

구분	2023	2024	2025.4.30.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233	311	107

- 동행정 04 -

○ 동별 수급자 현황 (김승수 위원)

- 해당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 가구 수
- 해당동의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
- 기초생활보장 중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가구 및 인원 수
-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수
- 교육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별 가구 및 인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별 현황(중복제외)

(2025.4.30. 기준)

기간	합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세대수	가구원수	세대수	가구원수	세대수	가구원수	세대수	가구원수	세대수	가구원수
2025	378	473	280	330	9	10	83	118	6	15
2024	383	481	276	327	11	12	89	125	7	17
2023	390	499	286	328	11	12	88	146	5	13

